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판사 정원 370명 증원〉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380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판사 정원 변동 추이	3
3. 검토의견	5
4. 관계기관 의견	11
참고자료 1. 판사 및 검사 정원 변동 현황	12
참고자료 2. 전체 접수사건 수 추이	1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4. 11. 8.

나. 회 부 일 : 2024.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음.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형사 본안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각국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연도별 증원 규모는 다음과 같음.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판사 정원 증원 규모>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증원규모	90명	80명	70명	70명	60명	370명

현행	개정안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u>3,214명</u> 으로 한다.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 ----- ----- <u>3,584명</u>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60명의 증원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판사 정원 변동 추이

- 판사의 수는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¹⁾에 따라 법률(「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로 정하며, 현재 판사 정원은 총 3,214명임. 실제 임용된 판사 수인 현원은 2023년 말 기준 총 3,192명이며, 현원 중 해외연수, 파견, 휴직, 사법연구, 미보임 신임법관 등을 제외한 가동법관 수는 2023년 말 기준 총 2,806명임.
- 2001년부터 현재까지 판사 정원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판사 정원은 2001년, 2005년, 2014년 총 3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을 통해 증원이 되었으며, 2001년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에 걸쳐 350명, 2005년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470명, 2014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370명이 증원되었음.
- 한편, 2012년 법조일원화제도와 함께 도입된 재판연구원은 현행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²⁾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그 정원을 정하고 있으며, 2012년 초기 정원은 200명이었으나, 2018년 250명, 2020년 300명, 2023년 350명, 2024년 400명으로 증원되었고, 2024년 11월 현재 재판연구원 현원은 총 399명임.

1)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판사 정원, 현원 및 가동법관 수 현황>

연도	정원	현원	가동법관 수	비고
2001	1,724명	1,453명		(2001년 개정) 350명 증원 - 350명('02년 70명, '03년 80명, '04년 100명, '05년 100명)
2002	1,794명	1,564명		
2003	1,874명	1,685명		
2004	1,974명	1,811명		
2005	2,074명	1,893명		
2006	2,124명	1,993명		(2005년 개정) 470명 증원 - 470명('06년 50명, '07년 80명, '08년 100명, '09년 120명, '10년 120명)
2007	2,504명	2,252명		
2008	2,604명	2,320명		
2009	2,724명	2,409명		
2010	2,844명	2,491명	2,330명	(2007년) 예비판사 폐지 300명 이관 - 판사 정원으로 흡수(+300명)
2011	2,844명	2,576명	2,367명	
2012	2,844명	2,678명	2,444명	
2013	2,844명	2,724명	2,465명	
2014	2,844명	2,748명	2,477명	
2015	2,894명	2,803명	2,500명	(2014년 개정) 370명 증원 - 370명('15년 50명, '16년 60명, '17년 80명, '18년 90명, '19년 90명)
2016	2,954명	2,862명	2,541명	
2017	3,034명	2,955명	2,626명	
2018	3,124명	2,922명	2,613명	
2019	3,214명	2,952명	2,596명	
2020	3,214명	3,036명	2,688명	
2021	3,214명	3,101명	2,710명	
2022	3,214명	3,151명	2,755명	
2023	3,214명	3,192명	2,806명	

주 1) 판사 정원에 1997년 도입되어 2007년 폐지된 예비판사 정원은 미포함

2) 2009년까지 가동법관 수 통계는 미집계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재정리

<재판연구원 정원 및 현원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원	20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250명
현원	100명	172명	170명	196명	196명	198명	200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	
정원	250명	300명	300명	300명	350명	400명	
현원	246명	272명	278명	289명	340명	399명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3. 검토의견

○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사법환경의 변화로 법관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70명 증원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민·형사 본안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르고 있음.

각국의 사법제도의 차이로 인해 이와 같은 수치가 각국 법관의 업무부담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일본(2019년 3,881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주요국 법관 업무량 비교(각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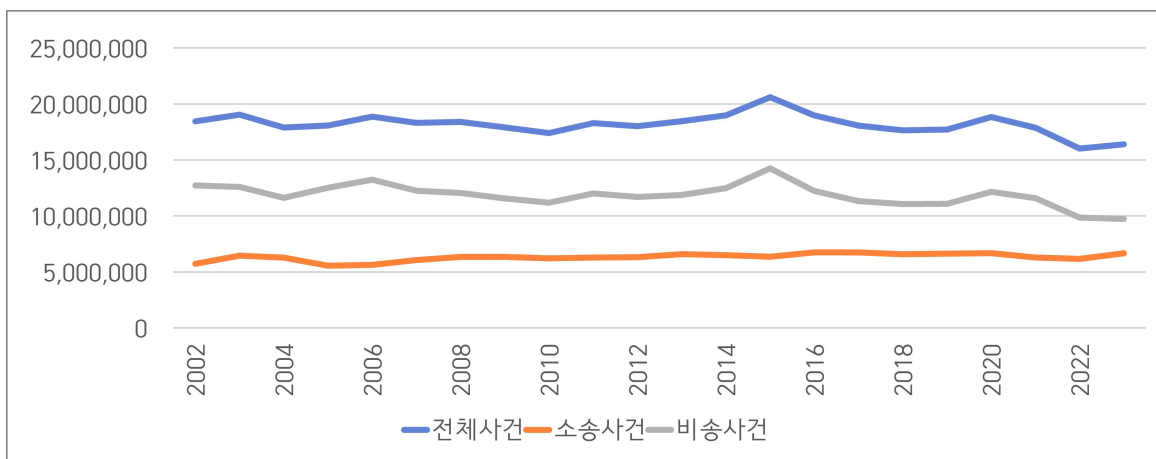
(단위: 명, 건)

국가	인구	1인당 GDP (\$)	법관 인원	민사, 형사 본안 접수	
				전체	법관 1명당
독일	83,132,800	46,445.2	23,835	2,136,254	89.63
프랑스	67,059,890	40,493.9	7,427	1,459,538	196.52
일본	126,264,930	40,246.9	3,881	589,106	151.79
우리나라	51,709,100	31,846.2	2,966	1,376,438	464.07

주) 우리나라 법관 인원 2,966명 = 대법원장 1명+대법관 13명+판사 2,952명(2019. 12. 31. 현원 기준)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의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비송사건) 수 추이³⁾를 살펴보면, 소송사건은 600만건대, 비송사건은 1,000만~1,200만건대로 등락을 반복하는 편으로, 증가 또는 감소의 명시적인 추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체 접수사건 수 추이만으로 법원의 업무부담의 변화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원 전체 접수사건 수 추이>



-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평균처리기간, 장기미제건수 등 현황을 살펴보면, 사건의 처리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민사본안(1심)의 평균처리기간은 2002년 3.7월에서 2023년 5.8월로, 장기미제건수는 2002년 2,454건에서 8,81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형사공판(1심)의 평균처리기간은 2002년 3.8월에서 2023년 6.0월로, 장기미제인원수는 2002년 900명에서 2023년 4,583명으로 증가함.

3) 구체적인 수치는 참고자료 2. 전체 접수사건 수 추이 참조

<민사본안사건(1심) 및 형사공판사건(1심) 처리기간 관련 현황>

연도	민사본안(1심)			형사공판(1심)		
	접수건수 (건)	평균처리 기간(월)	장기미제 건수(건)	접수인원수 (명)	평균처리 기간(월)	장기미제 인원수(명)
2002	1,015,894	3.7	2,454	208,506	3.8	900
2003	1,151,072	3.6	2,409	212,893	3.5	720
2004	1,190,231	3.6	2,677	238,358	3.1	649
2005	1,121,889	3.8	8,511	216,460	3.1	632
2006	1,288,987	4.2	2,255	227,696	3.0	627
2007	1,213,805	4.2	1,713	250,172	3.4	666
2008	1,259,031	4.2	1,289	274,955	3.4	560
2009	1,074,236	4.3	1,167	287,465	3.4	503
2010	981,188	4.5	1,405	263,425	3.5	766
2011	985,533	4.6	1,577	277,744	3.2	1,258
2012	1,044,928	4.6	1,855	292,707	3.1	1,722
2013	1,095,915	4.5	2,218	270,469	3.4	2,169
2014	1,136,935	4.3	2,835	268,823	3.9	1,410
2015	1,006,592	4.7	3,955	259,424	3.9	1,654
2016	973,310	4.8	2,142	276,074	4.1	1,860
2017	1,017,707	4.8	2,440	262,612	4.2	1,709
2018	959,270	4.9	3,098	240,244	4.5	1,990
2019	949,603	5.3	3,773	247,063	4.8	2,305
2020	926,408	5.5	4,855	260,154	5.2	2,323
2021	814,664	5.8	6,300	226,328	5.9	3,293
2022	744,123	5.9	7,746	219,908	6.0	4,781
2023	780,071	5.8	8,816	236,981	6.0	4,583

주 1) 민사본안(1심) 장기미제 기준: 2015년까지는 2년 초과, 2016년부터는 2년 6월 초과

형사공판(1심) 장기미제 기준: 2년 초과

- 2) 법원행정처 설명에 따르면, 민사본안(1심)의 접수 감소는 주로 민사소액 접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4. 12. 1. 시행)으로 민사소액사건으로 진행되던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 사건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사건으로 처리되게 됨에 따른 것임.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재정리

- 재판지연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건의 복잡성 증가, 재판제도나 사법행정권 행사의 문제,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 등 다양한 지적이 있으나, 2019년 이후 법관 정원이 증가하지 않은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 법관의 증원은 인력투입 증가를 통해 재판지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사회환경의 변화로 육아휴직 법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적정수준의 가동법관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한 판사 정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임.

<법관 육아휴직 현황>

연도	육아휴직 법관 수			연도	육아휴직 법관 수		
	남	여	계		남	여	계
2001	-	1명	1명	2013	25명	92명	117명
2002	-	1명	1명	2014	21명	91명	112명
2003	-	3명	3명	2015	31명	103명	134명
2004	-	4명	4명	2016	43명	98명	141명
2005	-	4명	4명	2017	51명	119명	170명
2006	-	9명	9명	2018	36명	99명	135명
2007	-	16명	16명	2019	66명	126명	192명
2008	7명	36명	43명	2020	54명	115명	169명
2009	4명	45명	49명	2021	39명	127명	166명
2010	10명	37명	47명	2022	58명	138명	196명
2011	15명	52명	67명	2023	66명	153명	219명
2012	19명	76명	95명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 또한, 2019년 이후 법관 정원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2019년 이후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2019. 3. 1. 개원), 수원/부산회생법원

(2023. 3. 1. 개원) 등이 신설되었고, 향후 창원가정법원(2025. 3. 1. 개원),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2026. 3. 1. 개원) 등도 신설될 예정이므로, 신설 법원에 적정한 수의 재판부 구성 등을 위해서는 법관의 증원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2019년 이후 법원 신설 현황>

법원명	개원일	개정법률	개정일
수원고등법원/수원가정법원	2019. 3. 1.	법률 제12419호	2014. 3. 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3. 1.	법률 제11623호	2013. 1. 23.
수원/부산회생법원	2023. 3. 1.	법률 제19149호	2022. 12. 27.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2025. 3. 1.	법률 제17124호	2020. 3. 24.
창원가정법원	2025. 3. 1.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2026. 3. 1.	법률 공포 전 본회의 의결 (2024. 11. 28.)	
인천고등법원	2028. 3. 1.		
세종지방법원	2031. 3. 1.	법률 제20464호	2024. 10. 16.

-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재판 지연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육아휴직 법관 증가 등으로 가동법관 수 확보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점, 2019년 이후 법관 정원은 변동이 없었으나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 다양한 법원이 신설 및 신설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사 정원의 확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재판지연 문제는 판사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재판제도 개선, 사법절차 간소화, 법관 사무분담 방식 개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

정원 확대 규모는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 법관의 재판업무를 돕기 위해 도입된 재판연구원 정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정원을 90명 증원하는 것이 예산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제21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5. 7.)는 동 개정안과 동일한 규모로 판사 정원을 증원하는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9065호)을 심사하여 증원 규모(370명)는 그대로 두고, 시행일만 일부 조정(2024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으나,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였음.

<개정안과 제21대국회 제출 정부안의 단계적 증원 규모 비교>

서영교의원안 (제22대국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90명	80명	70명	70명	60명	370명
정부안 (제21대국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	370명

- 당시 정부안과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전체 증원 규모(370명)는 동일하나, 단계적 증원 규모에 일부 차이가 있음. 당시 정부안은 시행 첫 해에는 50명을 증원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

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서영교의원안)은 시행 첫 해인 2025년에 9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4.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증원이 시급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개정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현재 법관 현원이 정원에 거의 근접(2024. 11. 1. 기준 판사 정원 3,214명, 현원 3,206명, 결원 8명)하여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증원 가능한 인원이 8명에 불과하여 충분한 수의 신임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므로, 개정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판사 및 검사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연도	정원(전년대비 증감)		연도	정원(전년대비 증감)	
	판사	검사		판사	검사
1976	534 (17)	397 (20)	1998	1,704 (140)	1,137 (50)
1977	564 (30)	417 (20)	1999	1,854 (150)	1,207 (70)
1978	594 (30)	437 (20)	2000	1,934 (80)	1,287 (80)
1981	624 (30)	467 (30)	2001	1,994 (60)	1,287 (-)
1982	674 (50)	497 (30)	2002	2,094 (100)	1,357 (70)
1983	724 (50)	527 (30)	2003	2,174 (80)	1,427 (70)
1984	774 (50)	557 (30)	2004	2,274 (100)	1,507 (80)
1985	824 (50)	587 (30)	2005	2,374 (100)	1,587 (80)
1986	874 (50)	627 (40)	2006	2,424 (50)	1,627 (40)
1987	974 (100)	667 (40)	2007	2,504 (80)	1,667 (40)
1988	1,024 (50)	707 (40)	2008	2,604 (100)	1,725 (85)
1989	1,074 (50)	747 (40)	2009	2,724 (120)	1,847 (95)
1990	1,124 (50)	787 (40)	2010	2,844 (120)	1,942 (95)
1991	1,174 (50)	827 (40)	2011~2014	2,844 (-)	1,942 (-)
1992	1,224 (50)	867 (40)	2015	2,894 (50)	2,032 (90)
1993	1,274 (50)	907 (40)	2016	2,954 (60)	2,112 (80)
1994	1,324 (50)	947 (40)	2017	3,034 (80)	2,182 (70)
1995	1,374 (50)	987 (40)	2018	3,124 (90)	2,252 (70)
1996	1,434 (60)	1,037 (50)	2019	3,214 (90)	2,292 (40)
1997	1,564 (130)	1,087 (50)	2020~2024	3,214 (-)	2,292 (-)

주) 판사 정원에는 1997년 도입되어 2007년 폐지된 예비판사 정원 포함

자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19063호) 검토보고서 참고 1. 업데이트

참고자료 2

전체 접수사건 수 추이

(단위: 건)

연도	합계 (A+B)	소송사건(A)			비송사건(B)
		계	본안사건	본안외사건	
2002	18,454,961	5,726,844	1,405,956	4,320,888	12,728,117
2003	19,049,082	6,454,778	1,545,934	4,908,844	12,594,304
2004	17,900,310	6,277,690	1,611,528	4,666,162	11,622,620
2005	18,078,554	5,557,903	1,520,532	4,037,371	12,520,651
2006	18,870,911	5,632,829	1,704,716	3,928,113	13,238,082
2007	18,317,691	6,063,046	1,670,475	4,392,571	12,254,645
2008	18,402,098	6,345,561	1,753,088	4,592,473	12,056,537
2009	17,910,728	6,345,439	1,594,952	4,750,487	11,565,289
2010	17,405,933	6,216,196	1,482,074	4,734,122	11,189,737
2011	18,295,844	6,287,823	1,503,696	4,784,127	12,008,021
2012	18,020,241	6,318,042	1,573,652	4,744,390	11,702,199
2013	18,466,987	6,590,720	1,605,623	4,985,097	11,876,267
2014	18,986,585	6,500,844	1,657,385	4,843,459	12,485,741
2015	20,609,851	6,361,785	1,525,846	4,835,939	14,248,066
2016	18,978,570	6,747,513	1,523,108	5,224,405	12,231,057
2017	18,069,526	6,742,783	1,555,602	5,187,181	11,326,743
2018	17,651,498	6,585,580	1,462,714	5,122,866	11,065,918
2019	17,720,328	6,634,344	1,461,440	5,172,904	11,085,984
2020	18,838,150	6,679,233	1,448,551	5,230,682	12,158,917
2021	17,884,639	6,291,467	1,297,441	4,994,026	11,593,172
2022	16,023,852	6,167,312	1,221,301	4,946,011	9,856,540
2023	16,399,629	6,667,442	1,266,734	5,400,708	9,732,187

주) 형사사건 중 형사공판, 치료감호, 형사본안외, 감치과태료사건, 소년사건 중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은 인원수(명) 기준으로, 그 외 사건은 사건 수 기준으로 집계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